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12. 13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1월 13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
제5차 행정위원회(2017. 12. 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보건소장 엄혜숙)

가. 제안이유

○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의료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환수에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체납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,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의 내용 및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 정비 (안 제2조제3호)
- 의료지원비 신청에 따른 서식 정비(안 제7조, 안 별표)
-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 신청 일원화 (안 제7조)
- 잘못 지급된 의료지원비 환수방법에 있어 체납처분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 삭제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묵)

○ 이 개정 조례안은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의료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지원금을 환수함에 있어서,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체납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의 내용과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
○ 주요내용으로는,

-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을 정비하였으며,

- 안 제7조(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)와 제7조의2(학생치과 주치의 의료비 신청)를, 안 제7조(의료지원비 신청)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여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비 신청을 일원화하였으며,

- 제11조제2항은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의료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환수에 있어서,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체납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법률 위반소지를 없애는 내용임.

○ 검토결과,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구강보건법」 과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의 위임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구에는 이상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17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11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의료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환수에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체납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의료지원비 신청에 따른 서식 정비(안 제7조, 안 별표)

나.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 신청 일원화(안 제7조)

다. 잘못 지급된 의료지원비 환수방법에 있어 체납처분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 삭제(안 제11조)

라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1) 「구강보건법」

2)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 · 성별영향분석평가 ·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7.9.28~ 10.18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제50조에 따라”를 “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으로서,”로 하고, “아동복지시설”에 등록된 아동 및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을 “아동복지 시설에 등록된 사람 또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으로 하며, “아동”을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7조명은 “(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)”에서 “(의료지원비 신청)”으로 변경한다.

제7조 중 “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”를 “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”로 하고, “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”를 “포함한 신청서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호 중 “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”를 “의료지원비”로, 제2호 중 “지원대상 아동의”를 “지원대상자의”로, 제4호 중 “필요한 사항”을 “의료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를 삭제한다.

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“저소득층 아동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 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영등포구”라 한다) 관내에 설치된 “아동복지시설”에 등록된 아동 및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하며, 그 외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역협의체에서 승인한 아동도 포함한다.</p> <p><u>제7조(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)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료비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</u> 의료기관명,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</p> <p>2. <u>지원대상 아동의</u> 이름, 생년월일, 주소, 진료내용</p> <p>3.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</p> <p>4. 그 밖에 <u>필요한 사항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으로서,</u> ----- ----- <u>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 또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</u>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 ----- -----.</p> <p><u>제7조(의료지원비 신청)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</u> ----- ----- ----- <u>포함한 신청서</u> ----- -----.</p> <p>1. <u>의료지원비</u> ----- -----</p> <p>2. <u>지원대상자의</u> ----- -----</p> <p>3. -----</p> <p>4. ----- <u>의료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사항</u></p>

제7조의2(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신청) 학생 치과주치의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 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신청 의료기관명,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
2. 지원대상 학생의 이름, 생년월일, 주소, 진료내용
3. 신청하고자 하는 치과주치의 의료비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제11조(환수조치)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,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경우 「지방세징수법」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

〈삭 제〉

제11조(환수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

〈삭 제〉